



# 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중장년층의 생계형 창업을 촉진·지원하고,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되었던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」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## 1. 개정근기
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취급기준 및 동 협약서 개정 알림」, (보증2016-6778, '16.03.18)

## 2. 주요 개정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대상기업	창업 후 3년	<u>창업 후 7년</u>
대출금리	3.9%(고정)	<u>3.5%(고정)</u>

## 3. 시행일 : 2016년 4월 1일(금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」 취급기준 신규조문대비표 1부.  
2.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  
3. 「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 
4.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대상 업종

---

★대리

팀장

부장

이사장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205 ( 2016.04.01. ) 접수 ( )  
우 121-802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08 서울신용보증재단 16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  
전화 02-2174-5215 /전송 02-3278-8117 / [bbangjaya@seoulshinbo.co.kr](mailto:bbangjaya@seoulshinbo.co.kr) / 공개